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1. 10. 20.(수) 10:00

제23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복지가족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41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. 10. 7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10. 8.

2. 제안이유

행정안전부의 ‘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(2020.12.)’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상위법인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위반된 사항 및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고,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’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

- 1)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위반된 “재위탁 선정 결과 통보 7일 이내에 이의 신청” 과 “이의신청 7일 이내에 통지” 를 삭제함(안 제14조제6항, 안 제14조제7항)
- 2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제4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 “재계약” 및 “재수탁” 을 “재위탁” 으로함(안 제14조제2항, 안 제14조제3항, 안 제14조제4항)
- 3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6조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취약보육에 대한 정의를 “영아·장애아·다문화아동·그 밖의 연장형” 으로 함(안 제16조제2항, 안 제24조제1항제6호)

나. 법제처 ‘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’ 권고에 따른 내용 정비

- 1)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“만료되다” 를 “끝나다” 로, “통지하다” 를

“알리다” 로 용어를 정비함(안 9조제3항, 안 제14조제2항, 안 제14조제3항, 안 제14조제4항, 안 제14조제5항, 안 제16조제4항, 안 제17조)

- 2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제2항 위반 소지가 있는 “심사항목 배점 및 동점 처리 절차 등 위원회 심의에서 조정” 을 삭제함(안 제13조제4항)
- 3) “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” 을 삭제함(안 제22조제4항)
- 4) “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” 을 추가함(안 제22조의2제5항)
- 5) “영유아보육법령 등 관계법령 준용” 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(안 제2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조, 제3조제1항, 제35조
- 2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제2항, 제24조제4항, 제26조제1항
- 3)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 이유

본 개정조례안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위반된 사항 및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고,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’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.

나. 주요 내용

- 1)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위반된 “재위탁 선정 결과 통보 7일 이내에 이의 신청” 과 “이의신청 7일 이내에 통지” 를 삭제함(안 제14조제6항, 안 제14조제7항)
- 2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제4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

“재계약” 및 “재수탁” 을 “재위탁” 으로함(안 제14조제2항, 안 제14조제3항, 안 제14조제4항)

3) 법제처 ‘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’ 권고에 따른 내용 정비

다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상위법인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영유아보육법」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법제처 ‘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’ 권고에 따른 내용 정비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제35조(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)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(起算)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영유아보육법」

[시행 2021. 8. 17.] [법률 제18415호, 2021. 8. 17., 일부개정]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①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

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1. 6. 7.>

②~ ③ 생략

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1. 6. 7., 2011. 8. 4.>

[전문개정 2007. 10. 17.]

[제목개정 2011. 6. 7.]